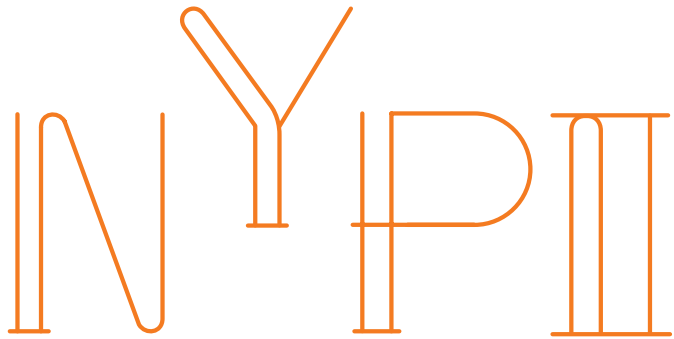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책임연구원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의철**(상지대 언론광고학부 ·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사건, 청주에서 일어난 4세 의붓딸 암매장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공론화하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속보위주의 보도 양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피해어린이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원영군의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보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더불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 기존의 보도준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이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 및 요인, 실태를 파악함. 아울러, 범죄보도 및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함.
- 전문가자문회의 :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하였음.
- 내용분석 :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 등 총 6개의 방송뉴스사가 신원영군 학대사망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

- 전문가인터뷰 : 기자, 언론학교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9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함.

3. 주요 연구결과

- 신원영균 학대사망사건보도에 드러난 주요 뉴스프레임은 아래 다섯 가지임.
 - 선정적 묘사 프레임: 학대/살해/유기/시신수습/장례식의 세부적인 묘사 및 관련 사진/삽화/사진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공개
 - 개인책임/처벌강화 프레임: 형량(공권력개입) 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주장,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 강조
 - 고정관념화 프레임: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를 강조, 계모=아동학대로 낙인 부여
 - 감정적 단죄 프레임: 뻔뻔함, 인면수심, 악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반사회성,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단죄하는 태도의 보도
 - 대안적 프레임: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공권력의 역할, 남은 자녀 등의 보호, 해외사례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
-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으로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보도의 부족, 계모에 대한 편견 강화 등을 지적하였음.
-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개선방향으로 피해아동의 인권존중,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의 필요성, 취재원의 다양화, 후속보도의 중요성 등을 제시함.

4.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관련 보도준칙을 검토하고 전문가인터뷰결과 및 자문에 기초해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취재과정, 보도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춰 가해자의 신원공개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금지 등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금지, 학대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제한, 피해아동주변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자제 등을 담고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II. 아동학대요인 및 실태	9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요인	11
2. 아동학대 실태	13
III.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19
1. 범죄보도의 문제점	21
2.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23
IV. 신원영군 학대사건 보도 분석	27
1. 양적연구결과	32
2. 질적연구결과	33
3. 뉴스분석 결론과 제언	43
V. 전문가인터뷰 분석	47
1.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49
2.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	52
3.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	55

Ⅵ. 아동학대언론보도 가이드라인	57
1. 기존의 보도준칙 분석	59
2.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71
참고문헌	77
부 록	80

표 목차

〈표 II-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3
〈표 II-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4
〈표 II-3〉 피해아동 가족유형	15
〈표 II-4〉 아동학대 및 방임률	16
〈표 II-5〉 아동학대 문항	16
〈표 II-6〉 가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18
〈표 IV-1〉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 경과	29
〈표 IV-2〉 방송사별 최초 및 마지막 보도 날짜, 보도건수, 보도분량 분석	32
〈표 V-1〉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55
〈표 VI-1〉 아동권리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64
〈표 VI-2〉 ‘자살보도 권고기준2.0’ 9가지원칙	65
〈표 VI-3〉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66
〈표 VI-4〉 성폭력사건 보도 실천요강	67
〈표 VI-5〉 UNICEF 아동취재가이드라인	70
〈표 VI-6〉 BPO의 아동살상사건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	71
〈표 VI-7〉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72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14
-------------------------------	----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¹⁾. 2013년 울주와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김은정, 2016). 특히 2015년 12월 부모의 학대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한 아동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기미결석학생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김은정, 2016).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2,478건이던 아동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달했고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함).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3.0%에 달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함).

이처럼 아동학대가 늘면서 최근 들어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령,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사건, 청주에서 일어난 4세 의붓딸 암매장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공론화하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속보위주의 보도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어린이의 생전 모습을

1)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87201F08C9E40F49427A595FF8A83740IK에서 2016년 4월 27일 인출

그대로 내보내거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죽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한국여성회 미디어운동본부는 메인 방송사들의 평택아동사건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자극적인 영상 구성,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재생산을 이 사건보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미디어스, 2016. 03. 17). 이 단체는 언론이 아동학대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멈추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초점을 뒤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디어스, 2016. 03. 17).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학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양정혜, 2010; 권인숙, 이화연, 2011; 홍숙영, 2011)는 일부 이뤄진 적은 있으나 최근 일어난 사건과 같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원영군의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보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군의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정책 전문가와 언론인, 언론학자, 아동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보도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언론이 지향해야 할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 기존의 보도준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 앞서 먼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아동학대의 증가추이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2)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하지만, 범죄보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에 드러난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3) 신원영군 사건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신원영군 사건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이 어떻게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지 양적, 질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 아동학대보도와 관련된 보도준칙 분석

아동학대보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보도준칙은 아직까지 없으나 이와 연관된 보도준칙은 몇 가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보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언론사의 보도준칙이나 관련 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아동학대보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신원영군 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과 전문가와의 인터뷰, 언론보도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언론이 지향해야 할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발생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범죄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2) 내용분석

공중은 아동학대 사건을 실제 경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미디어의 보도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연구는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가 강한 이미지와 호소력으로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과 JTBC, TV 조선, 채널 A 등 중편 3개 방송의 신원영군 사건에 보도에 대해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사용된 보도건수는 모두 70건이다.

3) 세미나 개최

표창원의원실, 한국소통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보도방향의 틀을 마련하였다.

4) 인터뷰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형사정책전문가와 언론인, 언론학자, 아동전문가 등 9명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5) 자문회의 개최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모두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첫째 회의 때에는 언론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회의 때에는 언론학자 뿐 아니라 현직 기자들이 참여하였다.

제 II 장

아동학대요인 및 실태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요인
2. 아동학대 실태

제 II 장 아동학대요인 및 실태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요인

초기에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국한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임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공계순 외, 2013).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으로 구분된다(크는나무아동상담소, 2010).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비행을 저지르기 쉬우며 가출하려는 동기를 강화시킨다(공계순 외, 2013). 특히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대인관계문제 등 다양한 정신병리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공계순 외, 2013).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관련 요인이 많이 꼽히고 있다. 즉 음주나 흡연 등 부모의 약물남용, 빈곤한 가족환경, 부모의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그리고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 등이 아동학대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크는나무아동상담소, 2010). 더불어, 가정폭력,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 등도 아동폭력의 주요 요인이다.

여진주(2008)는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동부권 내에 위치한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129건의 사정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가정이 고위험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의 순으로 아동학대빈도가 높았다. 즉 아동학대문제는 아동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정환경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최근 주목받는 이론으로 가족, 아동, 사회문화적 차원, 지역사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한다(강은영, 김희균, 2015).

한인영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기능이 강할수록 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정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을 강화하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광범위한 가족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 가족,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로 정의되었다. 가족 간의 신뢰나 돈독함,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아동의 신체적 학대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현기(2005)의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을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는 어머니 음주, 부모형태(계부모), 취업형태(맞벌이)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방임의 경우 부모의 음주행위, 부모취업형태(맞벌이)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음주행위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알코올 남용이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음주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음주보다 어머니의 음주가 아동학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영실(200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자기통제력이 낮고 부부간의 불화가 클수록 방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의 불화가 크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낮을수록 정서적 학대피해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부불화도와 부모의 일탈성(부모의 음주정도, 폭력경험, 범죄경력 등)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간의 불화가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은경과 박천만(2002)의 연구결과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양육태도가 좋지 않은 부모에게서 아동학대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학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분위기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음주행위와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은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위험요인이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아동학대와 연관돼 있었다. 아울러, 빈곤한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속한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에 속한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실태

아래 <표 II-1>에서 나타나듯이, 아동학대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02년 2,478건에 불과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0,027건으로 네 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건수는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는 2014년도의 경우 여러 학대가 중복돼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48.0%로 가장 높았고 방임이 18.6%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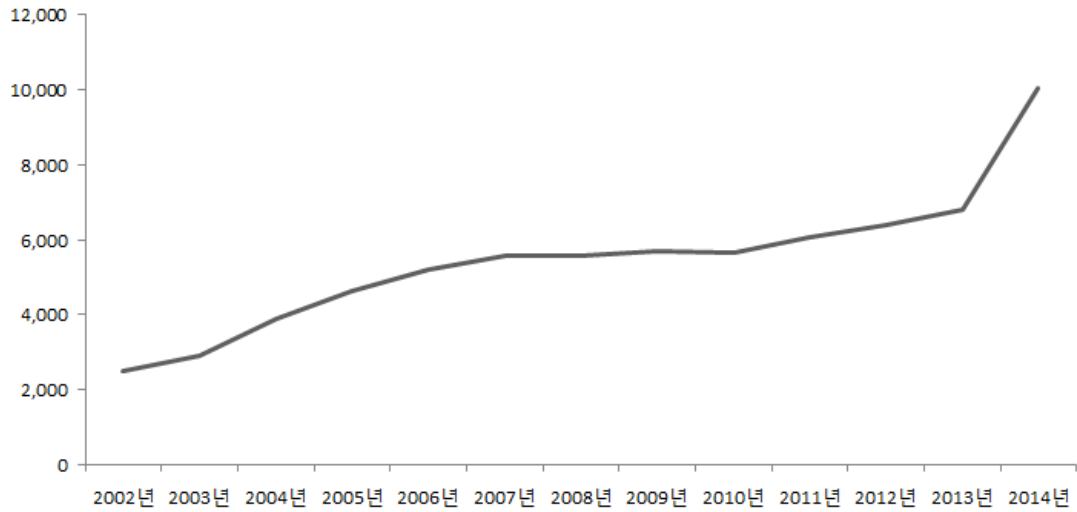
표 II-1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02년	2,478	254	184	65	1,026	949
2003년	2,921	247	207	134	1,078	1,155
2004년	3,891	364	350	177	1,492	1,508
2005년	4,633	423	512	206	1,782	1,710
2006년	5,202	439	604	249	2,111	1,799
2007년	5,581	473	589	266	2,166	2,087
2008년	5,578	422	683	284	2,294	1,895
2009년	5,685	338	778	274	2,054	2,241
2010년	5,657	348	773	258	1,884	2,394
2011년	6,058	466	909	226	1,836	2,621
2012년	6,403	461	936	278	1,713	3,015
2013년	6,796	753	1,101	242	1,788	2,922
(2013년 비율)	(100.0)	(11.1)	(16.2)	(3.6)	(26.2)	(43.0)
2014년	10,027	1,453	1,582	308	1,870	4,814
(2014년 비율)	(100.0)	(14.5)	(15.8)	(3.1)	(18.6)	(48.0)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2차 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38쪽.



【그림 II-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각 년도)

2차 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38쪽을 참조하여 표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아래 <표 II-2>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어 대리양육자가 9.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학대유형별로 보면 성학대의 경우 다른 유형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부모의 비중(51.0%)이 적었고 타인에 의한 경우(18.3%)가 높게 나타났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해 많이 저질러졌고 성학대의 경우 부모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가해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모	4,571 (80.2%)	5,130 (83.1%)	228 (51.0%)	2,894 (92.3%)	12,823 (83.0%)
친인척	351 (6.2%)	314 (5.1%)	49 (11.0%)	126 (4.0%)	840 (5.4%)

관계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대리양육자	662 (11.6%)	656 (10.6%)	52 (11.6%)	86 (2.7%)	1,456 (9.4%)
타인	37 (0.6%)	30 (0.5%)	82 (18.3%)	1 (0.0%)	150 (1.0%)
파악안됨	5 (0.1%)	11 (0.2%)	2 (0.4%)	8 (0.3%)	26 (0.2%)
기타	73 (1.3%)	35 (0.6%)	34 (7.6%)	21 (0.7%)	163 (1.1%)
계	5,699 (100.0%)	6,176 (100.0%)	447 (100.0%)	3,136 (100.0%)	15,458 (100.0%)

주: 중복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117쪽에서 재구성

<표 II-3>이 보여주듯이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44.5%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재혼가정 7.5%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의 절반가량은 친부모가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부· 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4,458 (44.5)	1,887 (18.8)	1,414 (14.1)	208 (2.1)	750 (7.5)	297 (3.0)	35.3 (3.5)	10 (0.1)	4,919 (49.1)	24 (0.2)	39 (0.4)	208 (2.7)	271 (2.7)	43 (0.4)	336 (3.4)	10,027 (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110쪽.

한편,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43.3%로 가장 높았고 아동학대의 85.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표 II-4>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및 방임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응답한 피해의 경우 방임이 40.7%로

나타났고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 순이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즉 최근 1년간의 피해경험을 질문한 결과 아동 10명중 4명은 어떤 식으로든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임이나 정서학대의 경우 차상위계층에서 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모응답의 경우도 아동응답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방임이 38.4%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로 나타났다.

표 II-4 아동학대 및 방임을

구분	피해 (아동응답)				가해 (부모응답)			
	수급층	차상위	일반	전체	수급층	차상위	일반	전체
방임	47.1	48.4	40.4	40.7	56.2	48.2	37.8	38.4
신체학대	5.4	5.6	6.2	6.1	4.4	4.8	3.8	3.9
정서학대	12.0	15.8	11.8	11.9	14.3	18.8	8.2	8.8

주 : 방임 5문항 중 1문항 이상 경험, 신체학대 5문항 중 1문항 이상 경험, 정서학대 3문항 중 1문항이상 경험률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315쪽.

아래 <표 II-5>는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때 사용됐던 문항들이다. 방임의 경우 아이를 혼자 있도록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됐고 신체학대에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포함됐다. 정서학대에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정도의 욕설과 모욕적인 말이 포함됐다.

표 II-5 아동학대 문항

구분	문항내용	
방임 경험	주양육자	△△(이)만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 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다
아동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구분		문항내용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신체 학대	주양육자	△△(이)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주위의 물건(예: 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이)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때렸다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으로 찔렀다
	아동	어른이 나를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어른이 주위의 물건(예: 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어른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어른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허리띠로 맞았다
		어른이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으로 나를 찔렀다
정서 학대	주양육자	△△(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
		△△(이)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아동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어른이 꾸짖은 적이 있다
		어른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어른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292쪽(방임경험문항), 301쪽(신체학대, 정서학대문항)에서 재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학대관련 사건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행동특성으로 폭력행동(31.6%)과 음주(29.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I-6>). 즉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흔히 가해원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인터넷(게임)중독의 경우는 2.4%로 매우 낮았다.

표 II-6 가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적응·행동 문제유무	없음	136	20.6
	있음	204	31.0
	미상	319	48.4
	계	659	100
적응·행동 특성*	주의산만	1	0.3
	인터넷(게임)중독	8	2.4
	불안	9	2.7
	애착문제	3	0.9
	무력감	5	1.5
	우울	38	11.6
	낮은 자아존중감	1	0.3
	성격 및 기질문제	25	7.6
	반항, 충동, 공격성	20	6.1
	거짓말	7	2.1
	도벽	1	0.3
	음주	98	29.8
	성문제	8	2.4
	폭력행동	104	31.6
	대인관계기피	1	0.3
	계	329	100.0

* 중복응답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120쪽.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아동학대 건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의 경제위기, 가족해체 등 아동보호기능의 약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은영, 김희균, 2015).

제 III 장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1. 범죄보도의 문제점
2.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제 III 장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1. 범죄보도의 문제점

범죄가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와 관련, 박용규(2001)는 범죄가 공공적이고 합법적인 주제이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쉽게 기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기사가 꾸준히 신문의 지면을 크게 차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언론이 상업화되면서 범죄를 주된 기사거리로 삼아 선정적인 보도가 확산됐다는 것이다(박용규, 2001). 하지만, 언론은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보도할 때 현실을 왜곡하거나 인위적으로 구성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경향이 있다(Payne, Appel, & Kim-Appel, 2008). 즉 특정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언론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을 과대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외국에서도 언론이 범죄와 부정적인 사건을 강조해 두려움과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영미 언론은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이라는 이항대립적 프레이밍을 통해 소수자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규정하며(Fejes & Petrich, 1993), 범죄 등 부정적인 사건을 부각해 집단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한다(Hall, Critcher, Jefferson, Clarke, & Roberts, 1978). 서구 언론은 법 준수와 애국심 등의 친숙한 프레임을 동원해 반전시위나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한국 언론도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통해 갈등을 정의함으로써 대안이나 해결책 숙의를 방해한다(양정혜, 2001).

언론의 범죄보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처를 환기시킨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개인 신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는 그 특성상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의 혐의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김경호, 2004). 박용규(2001)의 연구결과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기사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등 재판 전 단계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의자가 최종 무죄로 판결 받을 경우 그가 입게 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유형 중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도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흔하다(김경호, 2004). 아울러, 미디어에 묘사된 폭력적인 모습은 사회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곧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심영희, 1995). 김희승(2016. 3)은 언론사마다 범죄 보도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사실만 다룬다는 보도준칙이 있지만 보도경쟁이 시작되면 이러한 준칙은 종종 깨진다고 주장한다. 즉 언론은 강력사건을 보도할 때 강력범죄피의자의 반사회성과 비윤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하고 피해자 및 주변가족들의 인권에도 신경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김경호, 2004). 하지만, 이런 보도준칙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선과 김연식(2009)은 한국언론의 범죄보도특성과 문제점을 범죄혐의중심의 보도경향, 폭로중심의 보도경향, 선정적인 경향,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동반한 범죄보도 횡행 등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73쪽). 즉 경찰과 검찰이 주요 취재원이다보니 한국언론의 범죄보도는 수사단계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미성년자와 어린이가 관련된 범죄보도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범죄보도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 폭력범죄보도는 어린이들의 두려움을 증가시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우현, 정용국, 정지희, 2016). 또한 폭력범죄뉴스에 많이 노출된 어린이들이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인식하고 범죄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은 심리적 외상도 많이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범죄사건보도가 아동에게 큰 정신적, 정서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학대를 다룬 언론보도 가운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사건보다는 낯선 사람이 저지른 사건들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향이 크다(Cheit, Shavit, Reiss-Davis, 2010). 아동성폭력사건보도도 여타의 범죄보도처럼 사건의 심각성, 자극적 요소, 충격여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Cheit, Shavit, Reiss-Davis, 2010). 즉 사건자체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강할수록 보도가 많이 되는 것이다.

양정혜(2010)는 2008년 12월 발생한 나영이사건과 2010년 2월 일어난 부산여중생납치살해사건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신문에 나타난 지배적인 뉴스프레임은 감시와 처벌강화였다. 즉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확대, 전자발찌법의 개정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조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반면, 성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아동대상의 성범죄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범죄자들의 일탈성을 강조하는 모럴패닉화가 동시에 발생해 마치 성폭력이 사이코패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373쪽).

홍숙영(2011)은 KBS 시사기획 쌈이 다룬 아동성폭력관련 시사 다큐멘터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이 강조되었고 성폭력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결국, 아동성폭력의 재현은 사건중심의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맥락의 이해를 전달하지 못했다(111쪽).

권인숙과 이화연(2011)은 2010년 김길태 사건에 대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과 TV(KBS) 보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김길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층적 보도는 거의 없이 김길태 개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지나치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2012년 발생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고종석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집 위치가 위성사진으로 공개되고 집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2014). 또한 피해어린이의 사진과 일기장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언론에 의해 공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인권센터 측에서 소송을 도와 몇 개 언론사들이 손해배상을 물기도

했다. 즉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흔적과 같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중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2014). 일부 언론사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친척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최영주, 2014).

최숙(2016)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보도사건과 관련 “실종당시에는 긴급한 수사를 위해 신원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후속보도에서까지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신원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진이 게재되거나,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진채 피해자 어린이의 이름으로 사건이 구별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과도하게 세밀한 묘사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피해자의 미성년 형제자매들의 근황을 흥미위주로 전달하는 등 어린이들의 인권보호에 어긋나는 기사들을 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한다(37쪽). 그는 언론의 어린이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각 지침들에 전제되어 있는 어린이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실천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다(40쪽).

해외 연구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령, 말레이시아 언론의 아동학대사건보도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둔 나머지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 문화적, 정치적, 윤리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보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Niner et al., 2013). 또한 아동학대발생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 지라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보도가 여전히 자녀 돌봄과 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아동학대보도는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것과 같이 사건을 전달하는 일화주의적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 미국언론의 경우도 아동성폭력문제를 보도할 때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췄고 직접적으로 인용된 정보원들도 대부분 범죄처벌 및 집행에 관련된 사법당국 사람들이었다(Mejia, Cheyne, & Dorfman, 2012). 따라서 언론은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강조했고 그 결과 아동성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즉 보도의 80% 가량이 일화주의적 프레임을 사용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국언론의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프레임연구에서는 기대와 다르게 미국신문들이 아동학대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찾는 경향이 많아 주제적 프레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Hove et al., 2013). 또한 미국사회에서 실제로 여러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언론들은 방임보다는 아동성폭력

을 많이 보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범죄자나 가해자의 잔학성이나 일탈성 강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심층적 보도 결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경향,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조장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아동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아동의 인권을 잘 존중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제 IV 장

신원영군 학대사건 보도 분석

1. 양적연구결과
2. 질적연구결과
3. 뉴스분석 결론과 제언

제 IV 장

신원영군 학대사건 보도 분석

2016년 3월 9일 평택에서 한 부부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3월 12일 신군의 부모가 살해사실을 자백했고, 인근 야산에서 살해된 아동의 시신을 발견했다(<표 IV-1> 참조). 경찰수사 결과 신군은 이미 2월초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3개월간 욕실에 감금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모는 신군 몸에 락스 원액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발했다.

표 IV-1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 경과

일시	내용
2013년 8월	부모의 이혼 후 생모의 친권 포기로 세 살 위 누나와 함께 친부·계모에게 양육
2015년 4월	누나가 친할머니 집으로 옮겨가며 홀로 남겨짐
2016년 2월 1일	신씨 부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실에서 원영군의 옷을 벗겨, 찬물 퍼부은 후 방치
2일	화장실에서 끝내 사망
12일	베란다에 열흘간 시신방치 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 암매장
3월 4일	경찰, 실종사건 정식 수사 착수
9일	누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10일	실종사건 공개수사로 전환
12일	신씨 부부, 원영군 암매장 사실 자백 후 시신발견, 구속 수사
14일	경찰, 현장 검증 실시
16일	경찰 검찰로 사건 송치

출처 : <http://yalacoong.tistory.com/1791>에서 2016년 4월 27일 인출

경찰은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에 대해 2016년 3월 14일 현장검증을 진행했고, 16일 친부와 계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²⁾ 이 연구는 3월 8일 원영군 학대살해사건에 관한 첫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3월 하순 마지막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이 사건 뉴스를 수집해 분석했다. 먼저, 양적 분석을 통해 각 방송사 별 뉴스의 횟수와 분량, 시기를 조사했으며, 이어서 질적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각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과 주제를 파악해 어떤 의미가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언론이 재현하는 현실은 다양한 요인과 가치에 의해 재구성되며, 언론에 나타나는 이슈의 원인과 책임, 평가와 해결책도 재창조된 것이다(정수영, 2015b). 특히, 미디어는 범죄에 관한 핵심 정보원이자, 범죄뉴스의 확산자 역할을 한다(유우현, 정용국, 정지희, 2016). 일반인이 범죄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공중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노성호, 1997). 한편,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료제의 역할도 할 수 있다(심영희, 1995). 특히, 일반인의 사건 현장이나 이후 과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범죄보도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라 공중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나아가 정부의 대응책의 논의가 큰 영향을 받는다. 공중은 흉악범죄를 직접 목격하기 보다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이러한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양형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지고,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박지원, 박상조, 2013).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과 지나친 두려움의 확산은 사회적 불신의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6년 3월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의 경우 언론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사건의 현상을 중계하면서 숙보경쟁에 치중했고, 일부 언론은 원영이의 생전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고, 상담일지에 기록돼 있는 원영군의 누나가 친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공개해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둔감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계모학대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재혼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고,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했으며, 피의자가 노래방도우미출신이라는 불필요한 신상을 보도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락스 원액을 두 차례나 아이에게 들어부었다와 같이 잔인한 범죄수법을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전달한 것도 범죄예방 보다는 모방범죄의 우려를 낳게 했다.

2) <http://namu.wiki> 평택아동암매장살인사건 참조 (2016년 4월 28일 검색)

범죄보도가 범죄결과나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이나 맥락을 배제하며, 이로 인해 과잉처벌 분위기 조성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이진국, 2004). 또한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 정신과 전문의, 정치인의 목소리만 등장하며,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부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하고 있다(양정혜, 2001). 이러한 연구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군 학대사건 뉴스에서 등장하는 핵심 정보원과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군 학대사건 뉴스의 프레이밍의 특징과 채널 간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연구자가 뉴스의 영상과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독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2016년 3월 8일 원영군 사건이 첫 보도 된 후 KBS, MBC, SBS, JTBC, 조선TV, 채널A의 저녁 메인 뉴스의 원영군 사건 뉴스를 전수 수집한 결과 모두 70개의 뉴스가 선택되었다. 연구자가 뉴스를 직접 반복해 시청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프레이밍 구성을 분석했다.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등 영상 미디어 채널의 증가와 SNS, 스마트 기기의 발전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보도가 도달하는 채널과 범죄보도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은 범죄보도의 홍수 속에 실제 범죄 건수보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박지원, 박상조, 2013).

이 연구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범죄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정책에 미치는 미디어, 특히 영상매체인 텔레비전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8일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이 첫 보도 된 이후 KBS, MBC, SBS, 채널A, 조선TV, JTBC의 저녁시간대 메인 뉴스의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 뉴스를 전수수집해 분석했다.

먼저, 양적분석을 통해 각 방송사 별 뉴스의 수와 양, 뉴스가 나온 시기를 분석해, 주로 어떤 시점에서 뉴스가 집중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뉴스에서 어떤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었는지를 연구자가 직접 반복 시청하고, 분석하는 질적 분석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의미구성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질적분석에서는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영상을 통한 비언어적

표현과 이미지도 함께 분석했다.

1. 양적연구결과

각 방송사 별 최초 및 마지막 보도 날짜와 뉴스의 건수와 보도 분량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2>와 같다. 뉴스의 수집을 위해서는 각 방송사 메인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한 달 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매 일자별 뉴스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뉴스를 확인하고, 분석대상으로 수집했다. 이 표는 분석대상인 방송사 채널 명과 프로그램 명, 최초, 최종보도 날짜, 보도 건수, 보도 분량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TV 조선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채널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2 방송사별 최초 및 마지막 보도 날짜, 보도건수, 보도분량 분석

채널명	뉴스프로그램명	최초보도날짜	최종보도날짜	보도 건수	보도 분량
KBS1	뉴스9	3월 8일	3월 17일	9	16'09"
MBC	뉴스데스크	3월 8일	3월 27일	12	19'40"
SBS	SBS8뉴스	3월 8일	3월 27일	13	21'41"
JTBC	JTBC뉴스룸	3월 8일	3월 17일	10	20'51"
TV조선	뉴스쇼8판	3월 8일	3월 20일	18	31'32"
채널A	채널A종합뉴스	3월 9일	3월 15일	8	13'11"
뉴스 총 개수				70개	

분석대상 채널 명 : KBS1,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분석 기간: 2016년 3월 1일~ 3월 31일

KBS1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크, SBS의 8시뉴스, JTBC의 뉴스룸, TV조선의 뉴스쇼8판은 3월8일 원영군 사건에 대해 최초보도를 했으며, 마지막 보도는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 뉴스의 3월27일 이었다. 한 뉴스 당 분량은 1분대가 66개였고, 4개만 2분 이상이였다. 이는 맥락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보다는 표면적인 현상묘사 중심의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가 많았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 표는 분석대상 방송사와 프로그램 이름, 최초/최종보도 날짜, 그리고 보도 건수와 분량을 보여준다. 3월14일 현장검증과 3월 16일 검찰송치 이 후에도 뉴스가 일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가진 충격과 학대의 잔혹성, 그리고 뉴스로서의 중요성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2. 질적연구결과

뉴스의 의미를 구성하는 프레임은 이슈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주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된다(최윤정, 2016). 프레임은 담론을 생산하며, 정책과 권력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이슈의 사회적 맥락을 보여준다(Tankard, 2001). 한편, 언론은 저널리즘 규범에서 벗어난 비윤리적인 보도 관행과 정파적 보도경향, 속보특종 보도에 익숙해 있다(정수영, 2015b). 부르디외(Bourdieu, 1998)는 ‘TV 지식인(TV intellectuals)’ 개념을 통해 미디어가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자를 시청률 경쟁의 도구로 선호한다고 주장했고, 범죄나 이민자 등 소수자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뉴스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주제가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어떤 이미지와 주장이 주제로 뉴스에서 표출되는지를 뉴스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언론은 정보원의 말을 이념적 성향에 맞게 편집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과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인 담론을 확산한다(진달용, 고영준, 2012). 정보원은 뉴스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개인, 기관, 자료(공적/사적자료) 인지를 조사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이건호, 정완규, 2008). 내용적 프레임은 단어, 이미지, 키워드, 은유, 구문을 통해 뉴스의 주제를 밝혀냄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Andsager & Powers, 1999; Pickle, Quinn, & Brown, 2002; Treichler, 1999). 이러한 뉴스프레임 분석법에 따라, 먼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인 여섯 개 방송 채널의 원영군 학대살인 사건을 다룬 뉴스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반복 독해를 통해 뉴스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인 핵심 단어, 은유, 구문을 도출해 그 의미를 분석했다. 이어서, 영상의 비언어적 표현과 이미지도 함께 분석해 뉴스의 주제인 내용적 프레임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탐색했다.

또한, 뉴스가 인용하는 정보원과 주제와의 관계도 탐색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 보도에서 정보원과 뉴스의 뉴스채널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주제의 구성 과정도 분석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원영군 학대살해 사건보도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보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함을 목적으로 했다.

2016년 1월 ‘장기결석아동변사 사건’ 보도 분석에서는 지나친 취재경쟁, 경마저널리즘, 선정적 보도로 인해 학대수법과 살해, 시체유기과정이 실시간 반복 보도됨으로써 사건을 과장하거나, 오보를 낳고, 모방범죄나 2차 피해의 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과잉인식 하도록 했다고 한다(김희승, 2016).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뉴스에 내포된 주제인 내용적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질적 분석에서는 뉴스에서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영상, 사진, 삽화 등의 이미지도 함께 분석해서 뉴스가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드러내는지를 조사했다. 뉴스에서 의미를 드러내는 정보원과 핵심적인 단어, 문구, 은유, 이미지를 밝혀냄으로써 각 뉴스의 주제인 내용적 프레임을 도출했다. 아래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다섯 개의 내용적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다.

- 가) 선정적 묘사 프레임: 학대/살해/유기/시신수습/장례식의 세부적인 묘사 및 관련 사진/삽화/사진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공개
- 나) 개인책임/처벌강화 프레임: 형량(공권력개입) 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주장,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 강조
- 다) 고정관념화 프레임: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를 강조, 계모=아동학대로 낙인 부여
- 라) 감정적 단죄 프레임: 뻔뻔함, 인면수심, 악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반사회성, 비윤리성을 부각하고, 단죄하는 태도의 보도
- 마) 대안적 프레임: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공권력의 역할, 남은 자녀 등의 보호, 해외사례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

내용적 프레임의 경우 한 뉴스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채널 A 3월 11일 “[단독]계모 “전처 아이 키우기 싫었다””의 경우 단독을 강조하며, 원영군의 상담일지와 생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정적 프레임이지만, 계모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정관념화 프레임이기도 하다. MBC의 3월 13일 ‘평택’ 신원영군 계모’ 김 씨, 게임에 빠져 생활”은 제목에서부터 ‘계모’를 강조했고, 게임에 빠진 사생활을 비난했는데 이는 고정관념화 프레임과 감정적 단죄 및 선정적 프레임들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 때문에 이 연구는 각 뉴스를 하나의 내용적 프레임으로 굳이 규정하거나,

다섯 개의 프레임이 각각 몇 번씩 나타났다는 식의 양적인 분류에 치중하지 않았다. 대신, 이 연구는 뉴스에서 실제로 어떤 언어적(단어, 문구, 은유를 통한 규정이나 비난 또는 찬사), 비언어적 표현(영상, 삽화 등의 이미지를 통한 표현) 속에서 이러한 다섯 개의 프레임들이 구성되고,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 일화적 프레임과 패거리 저널리즘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기자들이 출입처를 중심으로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인 사고를 하며 유사한 주제를 의제로 선택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뜻한다. 이 경향은 주류언론의 종사자들이 상업화 및 위계화·표준화된 뉴스생산 구조 속에서 유사한 ‘해석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Zelizer, 1997). 이러한 저널리즘의 관행은 범죄사건과 같은 공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이슈의 경우 더 크게 작동한다. 여섯 개 방송사의 원영군 사건 뉴스에서의 형식적 프레임 분석에 의하면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70개의 뉴스 중 66개가 2분 미만이었다는 점과 상통한다. 경찰의 브리핑이나 신군을 보호했던 아동보호기관, 또는 주민에 대한 취재 또는 전화 인터뷰에 의존해 단신으로 뉴스를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범행수법이나 범행현장, 수사 상황, 피의자 압송 장면, 짧은 인터뷰 중심으로 뉴스가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 등 공식적 정보원 의존 현상도 두드러졌다. 시의성이라는 뉴스의 속성과 하루에도 몇 번 뉴스를 내보내는 방송의 특성상 속보를 증시하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정보원으로 선호한다고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피의자, 피해아동을 상담한 아동보호센터 관계자, 범죄나 심리 전문가, 주민 등 목격자의 순으로 등장했다. 특히, 압송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간략히 대답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피의자의 발언이 공중의 주목을 끌 수 있다는 점과 자극적인 범죄 동기나 수법을 폭로하려는 저널리즘의 동기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화적 프레임과 공식적 정보원 및 피의자 발언 중심의 뉴스는 방송사 간의 속보특종 경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BS1은 3월 8일 첫 뉴스 “‘의붓아들 길에 버렸다’…30대 계모 체포”와 3월 9일 “[단독] “7살 아들 산에 버렸다”…계모 ‘새 진술’”에서 경찰의 설명과 피의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특히, 3월 9일 뉴스에서는 제목부터 “...기자의 단독취재”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의붓아버지인 피의자의 주장과 아이가 방치된 거 같다는 주민의 의견을 내보냈다. 이는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보다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중심으로 성급하게 확대사실을 규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MBC도 3월 12일 “실종됐던 신원영 군, ‘암매장’된 채 발견”에서 원영군의 시신이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전하면서 피의자인 의붓어머니의 살해 부인 주장을 내보내고, 이미 거짓 주장으로 판명된 피의자의 진술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달했다. MBC의 3월 12일자 “뻔뻔한 부모와 무력한 사회망이 구조 기회 놓쳐”에서도 피의자인 의붓아버지가 “아이가 보고싶습니다”라는 거짓진술 하는 모습을 다시 내보냈다. 이는 피의자의 대답이 거짓 진술이라며 반복해 내보내면서 피의자에 대한 공중의 분노와 주목을 이끌어내는 의도로 해석된다. MBC의 3월10일 뉴스에서는 신군 아버지가 3인분의 음식을 사 갔다는 점을 CCTV와 음식점 주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전하면서 이들 부부의 행적을 추정했는데, 수사초기에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피해자의 행적을 추정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피의자와 주변인의 진술 중심의 접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흥미로운 정보원의 주장을 손쉽게 전달하는데 익숙한 저널리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KBS 1의 3월 12일 “끝내 주검으로...암매장 어떻게 밝혀냈나?”에서는 경찰의 시신 수습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었으며, 원영군의 시신을 할아버지 묘소 옆에 묻은 것은 원영군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였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이는 흥미중심으로 단순하게 묘사하는 일화적 프레임의 기법이며, 사적이며, 본질과는 관련 없는 황당한 피의자의 주장까지 인용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선정적 묘사와 개인책임/처벌강화 프레임

KBS 1 3월 12일 자의 ““락스 붓고 때리고”...거짓말로 범행 은폐”에서는 욕실에서 상의를 벗은 원영군에게 찬물을 뿌리는 삽화를 보여주었다. 채널 A의 3월 11일 “[단독]계모 “전처 아이 키우기 싫었다””에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의 문제를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했다. 또한, 명든 사진, 아동센터 상담자료, 원영군의 생전 모습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고, “락스”, “찬물”, “구타”, “욕실”, “알몸” 등의 자극적인 용어와 삽화, 사진, 그림자가 들어간 영상을 통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선정적인 접근은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보다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2차 피해 가능성을 높이며,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즉, 시신수습 장면, CCTV에 찍힌 행적, 장례식에서 오열 장면, 피의자 압송장면 등이 반복해 등장했다. MBC, SBS, 채널A, 조선TV는 3월 13일 장례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유족의 오열하는 모습(MBC와 채널 A), 화장되기 직전의

상황(조선TV), 관이 차에 실리는 모습과 화장로에 놓인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모습(SBS)까지 불필요하게 자세히 묘사했다. TV조선의 3월 12일 “‘고문 같았던 학대’…계모, 욕실 감금에 락스 붓고, 굶겨”에서는 시신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는 모습과 흰 천과 비닐로 싸여진 시신 모습을 내보냈다.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도 속보특종 경쟁의 결과이며, 경쟁적인 범죄보도로 인해 범죄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 및 모방범죄의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범죄예방에는 역효과를 줄 수 있다(박지원, 박상조, 2013).

TV조선의 3월 12일 “[TV조선 단독] 범행 직후 알리바이 만들기 올인…친부·계모 은폐시도 정황”에서도 ‘단독’임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미 알려진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과 목격했다는 슈퍼 주인의 언급을 소개하는 것에 머물렀다. 피의자의 말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차분하게 수사진행을 분석하기 보다는 피의자의 거짓 주장을 반복해 전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뉴스는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예방책이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를 반복해 언급하면서 마치 재판결과과도 나온 듯이 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TV조선은 3월 12일 “학대에 사체는닉…선진국선 살인죄 적용”에서 정보원으로 등장한 변호사의 언급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인처벌 강화 프레임을 구성했지만, 살인죄 적용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JTBC 3월 15일 자 “경찰 “원영 군 의붓어머니, 모바일게임 4000만원 써””에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살인죄 적용을 강조하며 처벌강화 프레임을 구성했다. SBS도 3월 16일 “‘여보, 저 xx 갖다 버려’…원영이 학대 부모 ‘살인죄’ 적용”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경찰의 살인죄 적용을 부각했다. KBS도 3월 17일 “[집중진단] ① ‘원영이 사건’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상황을 전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길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하며,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잘 몰랐어요”라는 피의자의 변명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 즉,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다거나 아동살해의 경우 형량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등의 상식적인 발언을 전문가를 통해 제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조차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보원의 발언을 충분히 소개하든지, 기자의 설명을 통해 더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살인죄 적용이 극적인 면을 갖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막상 일화적 프레임과 기자의 제한된 지식과 불충분한 뉴스 분량으로 인해 그 근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언론이 범죄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을 제공하면서 범죄에 대한 개인 처벌중심의 보수적인 접근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Hallstone, 2000)와 범죄보도가 범죄결과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범죄를 유발하

는 환경을 배제해 개인에 대한 과잉처벌 분위기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한국의 연구결과(이진국, 2004)와도 유사하다.

경찰수사단계의 법 적용은 검찰송치 시 필요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며, 검찰수사나 재판에서 얼마든지 바뀔다는 점에서 반복강조가 불필요하며, 공중에게 마치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과잉처벌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아동 성범죄 보도가 편협한 ‘법과 질서유지’의 프레임 속에서 범죄를 일으킨 개인의 일탈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사이코패스로 규정하고, 모럴패닉을 유발했다는 선행연구(양정혜, 2010)와도 상통한다. 방송사들은 공통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취재경쟁을 통해 범행 동기나 수법을 알아내는데 집중했다. 특히, 압송 중인 피의자의 짧은 대답을 듣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피의자의 거짓 진술일 수도 있는 내용을 반복 보도해 오히려 범죄 상황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과는 반대로 피의자의 짧은 발언을 부각해 피의자 개인의 인성의 문제를 부각하고, 피의자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경우로 해석된다. 피의자에게 문답식의 짧은 질의응답을 시키고, 이후 거짓말이라고 반복해 보여주며 매도하는 방식은 국민의 알권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공중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정적이고,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뉴스는 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이차 피해나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김옥조, 2004) 개선이 필요하다.

3) 고정관념화와 감정적 단죄 프레임

뉴스에서는 제목에서부터 “계모 김씨..”등의 표현을 반복해 계모나 재혼가정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크다는 고정관념을 부각했다. TV조선의 3월 12일 “‘고문 같았던 학대’...계모, 욕실 감금에 락스 붓고, 굶겨”, 3월 15일 “원영이 굶긴 ‘악마 계모’, 게임엔 수천만 원 쏟아 부어”는 제목에서부터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부여했다. 채널 A의 3월 11일 “[단독]계모 “전처 아이 키우기 싫었다” 에서도 계모가 전처 아이를 키우기 싫었다는 수사 초기의 진술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강조했으며, “계모가 우산을 주지 않아 우박을 맞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신 군의 누나는 “방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밥은커녕 김밥만 줘요”라고 친엄마에게 편지를 썼다가 계모에게 들킨 일도 있었습니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학대 정황들을 공개해 아동학대 자체보다는 계모에 대한 공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널 A 3월 15일 “원영이 계모, 인터넷 게임에

6천만 원 탕진”에서는 “비정한 계모는 화장실 불까지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영군은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 벽을 보고 섰습니다” 등 계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극적인 학대정황들을 서술했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했다. TV조선의 3월 12일 “‘고문 같았던 학대’…계모, 욕실 감금에 락스 붓고, 굶겨”에서는 욕조에서 알몸으로 피의자로부터 찬물을 맞기 직전의 아이의 삽화, 몽둥이로 맞는 그림자 영상을 등장시켰다. 이는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망자의 권리까지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JTBC 3월 15일 “경찰 “원영군 의붓어머니, 모바일게임 4000만원 써””에서는 의붓어머니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사생활과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JTBC는 의붓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범행동기를 예단했는데, 뉴스 첫 부분에서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김 씨가 모바일게임에 빠져 신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라고 “모바일 게임=아동방치 또는 학대”라는 예단을 제시했다. 특히, 친부의 지인이란 사람의 “도우미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서 못 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서로) 좋아서…”라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전화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고, “통화내역에는 남편 외엔 아무도 없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을 폭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지상파 방송도 고정관념과 강화와 인권 무시라는 면에서는 종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MBC는 3월 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뉴스부터 “30대 계모 7살 아들 길에 버려, 아동학대 부부 체포”라는 제목으로 계모임을 부각했으며, 3월 13일 뉴스에서는 “평택 ‘신원영군 계모’ 김 씨, 게임에 빠져 생활’로 ‘계모’를 강조하면서 게임에 빠져 생활한 것이 마치 아동학대의 원인인 것처럼 예단했다. KBS도 3월 8일 첫 뉴스에서 “‘의붓아들 길에 버렸다’…30대 계모 체포”를, 그 다음 날에는 “단독 ‘7살 아들 산에 버렸다’…계모 ‘새 진술’”을 통해 ‘계모’임을 부각했다. 계모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용한 KBS와 MBC와 달리 SBS는 3월 8일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실종…학대 부모 체포”, 3월 9일 “실종 아동 사진 속 ‘멍자국’…학대 부모 구속” 등 제목에서는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 뉴스에서는 “계모”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SBS의 3월 9일 뉴스에서는 “계모학대 정황 드러나”라는 텍스트를 화면 좌측 상단에 계속 제시함으로써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했고, 원영군의 상처 난 다리와 엉덩이 사진은 물론, 아동센터의 상담내용을 강조해 보여주면서 망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고정관념화 프레임은 인권 침해를 낳으며, “계모 = 아동학대 = 개인의 일탈 = 처벌 강화”라는 등식을 강요하는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후속 대책에 관한 뉴스에서도 고정관념을 확산하는 프레임이 나타났다. 3월 27일 MBC(제2의 신원영 막는다, ‘아동학대’방지 교육받아야 이혼)와 SBS(‘원영이 사건’막는다…이혼 전 ‘학대 방지교육’)는 법원의 이혼 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책을 다루었다. 이는 재혼가정 = 아동학대라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원의 대책을 비판 없이 법원의 관점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다수가 친부모에게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외면하고, 재혼가정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특히, 가정법원공보판사의 주장을 전화로 간단히 소개했지만 전체 뉴스가 1분 30초대의 단신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취지를 소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송사들은 “뻔뻔한”, “비정한 계모”, “인면수심”, “악마계모”, “끼니를 꼬박꼬박 먹는다”, “변명만 늘어놓았다” 등의 감정적인 단어와 문구들을 동원해 피의자를 단죄하고, 피의자가 반성이 없고,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채널 A는 3월 9일 “비정한 새엄마 ‘살해는 안했다’ 뻔뻔한 변명”에서 “비정한”, “뻔뻔한” 등의 감정적인 용어를 남발했다. SBS도 3월 13일 “끝까지 “미안하다” 말 없는 계모…수백 명 주민 ‘분노’”에서 “계모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하며, 이미 전에 뉴스에 나온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반복해 보여주었다. TV조선은 3월 14일 “‘너도 락스 학대 받아봐’ 흥분한 시민들”에서 현장검증 중에 시민들이 락스통을 던지는 시위 모습을 소개했다. 이 뉴스에서는 “(3개월 동안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죽을 거라고 생각 안했나요?) “잘 몰랐어요” 등의 피의자의 거짓말을 다시 보여주었으며 “(피의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거짓말쟁이로 단죄하는 의도를 보였다. JTBC의 3월14일 “너도 락스 학대 받아봐”에서는 시민들이 락스통을 던지거나 뿌리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시위모습과 함께 “비정한 계모는 ‘신군이 죽을 줄 몰랐다’고 변명해 공분을 샀습니다”,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피의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TV조선의 3월 16일 “‘여보, 저 xx 갖다 버려’…원영이 학대 부모 ‘살인죄’ 적용”에서도 “계모 38살 김모씨는 잘못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라는 언급을 제시해 역시 피의자가 잘못을 시인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MBC의 3월 14일 “평택 신원영 군 현장검증, ‘살인죄 적용하라’ 시민들 분노”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시위대의 모습과 “납치계모 XXX. 살인죄 적용하라. 적용하라”, “야! 나쁜 X야.. 야! 나쁜 X야!”라는 시위대의 감정적인 구호를 보여주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시민의 인터뷰까지 등장시켰다. SBS의 3월 16일자 “한겨울 락스·찬물 붓고 방치, 살인죄 적용”에서도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계모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를 통해 계모의 잘못 시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감정적 단죄 프레임은 언론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암시하며, 개인책임/처벌 강화 프레임과도 연결된다고 해석된다.

4) 대안적 프레임의 부족

뉴스에서는 아동보호체계 보완, 아동학대 예방 정책, 남은 자녀나 피해자 보호, 해외사례나 정책 제시 등을 다루는 대안적 프레임이 부족했다. 이는 70개의 뉴스 중 2분미만이 66개로 다수였다는 점과 연관된다. 즉, 짧은 단신 뉴스로는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과 원인, 대책을 다루기가 어렵다. 또한, 범죄 동기나 수법, 수사진행을 쫓는 현상중심의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가 많았는데, 이는 범죄뉴스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주류저널리즘이라는 해석의 공동체 속에서는 다소 간의 의견의 차이를 상쇄하면서, 유사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며, 프레이밍하는 경향과도 연결된다(Zelizer, 1997). 일화적 프레임과 공식적 정보원 중심의 보도는 선정적이고,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프레임을 양산하며, 이는 부르디외(Bourdieu, 1998)가 주장한 시청률지상주의와 관련된다. 범죄가 흥미 있는 소재이며, 범죄의 수가 넘치기 때문에 범죄뉴스의 양을 조절해 기사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의 소재로 선호되지만(박용규, 2011), 이 점 때문에 다른 자극적인 범죄사건이 뉴스 소재로 빠르게 대체된다. 또한, 수사기관, 정신과 의사, 정치인의 목소리만 등장하며, 피해자나 일반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는 연구결과처럼(양정혜, 2001), 원영균 사건 보도에서도 경찰이나 전문가, 주변인물의 목소리만 들리고, 막상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를 겪은 아동이나 보호자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원 선택의 편중도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대안 탐색에 치중하는 프레임의 부재로 연결된다.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이 피해아동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안 모색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KBS 3월 12일 “‘신 군 누나는 어찌나?’ 학대 가정의 남은 자녀도 피해자”에서는 아동상담센터의 인력과 권한 부족, 부모의 반발에 대한 무대책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공권력 투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SBS 3월 13일 “3년 전 학대 알고도 ‘사회 안전망’ 없어 못 구했다”를 통해 사회안전망 미작동과 경찰/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제안하는 등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대안제시를 했지만, 역시 구체적 설명이 더 필요했다. 3월 15일 SBS는 “아동학대 특례법? 부모 호통 앞에선 ‘무용지물’”을 통해 아동학대 특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증명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우이다. SBS는 3월 16일 “학대 아동 갈 곳은 학대 가정뿐…재학대 악순환”에서 아동보호 기관 팀장 등 현장 전문가의 주장을 통해 학대아동의 74%가 학대가정으로 되돌아가서 재학대 비율이 높고,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조했는데, 주제적 프레임을 통한 대안 분석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MBC는 3월 12일 “뻔뻔한 부모와 무력한 사회망이 구조 기회 놓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을 지적했지만, 관련 파출소와 원영군을 상담했던 아동보호 센터 관계자의 언급을 소개하며 관계기관이 구조하지 못한 이유와 아동보호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만 간략히 설명해 일화적 프레임 속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TV조선은 3월 20일 평택시의 장례비 지원과 원영군 누나에 대한 생활비(교육비)을 언급했지만, 장례식과 화장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뉴스 끝 부분에서 간략히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다른 두 종편 채널은 원영군 누나나 피해자 가족의 지원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한편, JTBC는 3월 20일 “[팩트체크] 원영이 부모 얼굴 비공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7분여의 긴 시간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공개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법대교수 의견,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피의자 얼굴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부모가 구속될 경우 남아있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TV조선은 3월 13일 “[뉴스 인사이드] 인면수심 부모들…”엄격한 처벌 기준 필요”를 3분 38초 동안 비교적 길게 내보냈지만, 부모의 월수입이 높았고, 부모의 인성이 문제이며, 아이를 싫어했다는 관련성이 부족한 주장을 정보원의 활용도 없이 기자대담을 통해 제시했다. 특히, 아이들이 학대당한 정황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일화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검찰 송치 후 몇 차례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보도가 중단되었다가, 8월 10일 1심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 가벼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촉발되면서 다시 잠시 뉴스화 되었다. 이는 경찰이 10일간 수사한 뒤 송치하는 시점에서는 뉴스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사건으로 관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후속보도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후속취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KBS만 3월 17일 연속 기획으로 “[집중진단] ① ‘원영이 사건’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전했다. KBS는 같은 날 “[집중진단] ② 숨방망이 처벌...‘양형 기준 강화해야’”에서 아동학대를 포함한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을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두 집중진단이 1분49초와 1분38초로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했다. 향후 일화적 프레임을 통한 범죄수법이나 현장 묘사는 줄이고,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의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뉴스분석 결론과 제언

공중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언론이 매개하는 현실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가치에 의해 구성된 상징적 현실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이슈의 원인과 책임, 도덕적 평가와 해결책도 재구성된 것이다(정수영, 2015b). 이 점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아동학대는 실제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범죄혐의와 폭로 중심이며, 선정성, 인격권 침해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목소리가 중심이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이승선, 김연식, 2009). 원영군 사건 보도에서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아동의 몸에 난 멍이나 상처 사진, 학대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삽화, 구타 장면 등의 영상, 시신수습 영상,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의 운구 모습이나 오열하는 장면, 계모=아동학대의 주범으로 고정관념화, 시위에서의 과격한 구호, 살인죄 적용 강조 등의 선정적 묘사와 개인 처벌 만능을 강조하는 보도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패거리 저널리즘과 시청률지상주의(Bourdieu, 1998)에 입각한 속보특종 경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원으로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등장한 경우도 전화인터뷰를 통해 발언의 일부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사건에 대한 이해보다는 혼선을 줄 수 있다. 원영군을 자주 봤다는 주민, 암매장 전 피의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가게 주인, 원영군을 상담했던 아동상담센터 관계자가 반복해서 등장했으며, 이는 정보원이 차지하는 중요성보다는 접근가능성과 흥미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되며, 뉴스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뉴스에 등장하는 정보원과 핵심 단어, 문구, 은유 영상 등 이미지를 종합해서 다섯 개의 내용적 프레임을 도출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 프레임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등장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와 담론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는 계모나 문제 있는 부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살인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이들 ‘악마’ 같은 반사회적인 존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망자나 피해자 및 피의자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고, 이차피해나 모방범죄의 우려도 낳았다. 살해/학대/유기/시신수습 등의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묘사되고, 피의사실이 단정적으로 규정되며, 언론이 피의자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단죄하는 심판관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살인죄 적용을 반복해 강조되는 등 ‘처벌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검찰 송치 후 사실상 보도를 중단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나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을 찾는 노력과 공동체의 책임을 분석하는 노력은 미비했다.

이러한 아동학대 보도의 경향은 한국 언론의 특성과 저널리즘 문화와도 관련이 깊다. 한국의 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축적된 ‘저널리즘 문화’와 같은 내부 동력이 부재하고, 냉소주의, 소극적보도, 책임회피주의가 만연해 있다(최영재, 2014). 공식적 정보원에 의존하는 관행은 ‘대세동조형’의 획일적인 집단사고를 낳으며, 수동적 취재를 낳는다(정수영, 2015a). 이는 제리저(Zelizer, 1997)가 주장했듯이 방송사들이 주류방송사라는 ‘해석의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프레이밍하며, 현실과는 다르게 흥미중심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경향과도 관련된다. 이는 상업화된 언론의 장에서 ‘시청률지상주의’(Bourdieu, 1998)를 통한 이윤추구가 우선시되면서 진실탐사와 분석보다는 몰려다니면서 자극적인 뉴스를 양산하는 ‘패거리 저널리즘’과도 관련된다. 방송심의규정 제15조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범죄보도의 경우 실제 취재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범죄 상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저널리즘 관행이 존재한다(김옥조, 2004). 뉴스에서 반복되는 경찰이나 구치소에서 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취재를 통해 얻은 것인지, 출입처를 중심으로 공유하면서 얻은 것인지도 의문일 정도로 정보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남아 있는 자녀의 생계 문제가 절실함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문제 보도에 소홀했는데, 이는 아동보호 정책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마련되어 온 점과 관련된다(김은정, 2016). 향후, 언론이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체계의 수립, 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반대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담론의 확산에 나서야 하며, 주목을 끌 만한 선정적 내용이나 장면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와

복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원영군 사건의 경우 2016년 3월 하순 마지막 보도 이후 2016년 8월 10일 1심 판결이 있기까지 후속보도가 거의 없었다. 후속보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고 있는지, 남아있는 아동의 보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JTBC만 계모라는 표현대신 의붓어머니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용했다. 의붓어머니에 대해 좀 더 적절한 ‘호명’을 방송에서 사용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는 재혼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 아동학대 보도 시 선정적 보도, 고정관념화, 개인처벌 강조, 감정적 단죄 프레임에서 벗어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권은 물론,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보도관행이 적립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보도 준칙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서 시신수습이나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의 모습, 오열 모습, 자극적인 삽화나 영상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5조 2절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언론인 교육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및 비평의 강화가 요구된다. 윤리강령 등 언론의 자율규제가 강제적 이행 규정 미비로 지켜지지 않으며, 언론의 책임을 개인의 판단이나 양심에 맡기기 때문에 오보에 대한 언론의 책임의식도 부재한 상황에서(정수영, 2015a), 시민의 모니터링과 비평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보원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센터 관계자, 범죄학이나 심리학 교수 등이 주로 등장했는데,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과 아동복지나 가족학 관계자들이 더 자주 등장해 장기적인 대책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나 전문가 등 정보원과 짧은 전화인터뷰가 많아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차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도구이다. 이 점에서 범죄보도에 대한 옴부즈맨/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편성, 언론사 간 상호비평, 언론학계나 시민단체의 전문적인 모니터링/비평 체계를 강화하고, 그 내용도 공개해서 자율규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범죄보도는 피해자와 국민전체의 안전과 인권,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기자를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언론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론의 장을 위에 언론에 위임된 권리이며, 언론인(사)가 마음대로 쓰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언론인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호기심 충족이나 선정적 보도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언론/수사기관/언론학계/아동청소년 전문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관련 범죄보도의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언론의 거대화/상업화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나 국민의 알권리, 또는 진실추구보다는 이윤확대가 범죄보도 등 뉴스의 의제선택과 프레이밍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언론은 전문적으로서의 교육이나 평가시스템이 부실하며(정수영, 2015a), 공정보도의 전통과 축적된 객관적 저널리즘 문화도 부재하다.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 자본가나 엘리트 언론인만의 독점물이 되었고, 언론기관의 자율규제가 사적 검열화 되면서 공중의 접근과 참여는 제한되었다(이병남,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어떠한 개입으로부터도 언론만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은 수동적/엘리트적인 언론 자유 개념이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언론의 역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이 요구된다(정수영, 2015a). 국민의 알권리는 호기심 충족과 다르며,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용의자의 피의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피의자의 전력이나 전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취재원을 명시해 기사가 전해들은 전문임을 밝히는 관행의 필요성이 크다(김옥조, 2004). 또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아동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맞서는 대안적 메시지와 담론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제 V 장

전문가인터뷰 분석

1.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2.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
3.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

제 V 장

전문가인터뷰 분석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법전문가 1명, 아동복지전문가 1명, 기자 1명, 변호사 1명, 언론학자 3명, 아동보호기관종사자 2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질문하였다(질문내용은 부록 1 참조).

1. 아동학대사건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

1)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아동학대사건보도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이다. 이와 관련, 인터뷰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지방경찰청 형사과 등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검거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지방경찰청과 그 지역 언론사들도 덩달아 더 선정적이고 가혹하게 보이는 사건의 발굴과 보도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더 가혹하고 잔인, 비정하게 보이는 듯한 사건의 발굴과 선정적인 언론보도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서 자주 발견되는 언론보도 경향입니다(언론학자 3 000).

현장검증 및 범행재연장면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구성하고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아동복지전문가 000).

아동학대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재연, 상세한 범행 동기 등의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끔찍한 기분을

느리게 하며,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원래의 자료를 느리게 재생하거나 확대하는 등 원래 자료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아동보호기관종사자 1 000).

사건을 원색적인 언어를 사용해 시각화 하듯이 묘사(예를 들어 발가벗기고, 믹서기 구입하고 청국장 끓여 냄새 없애, 미라상태 딸 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정적인 묘사는 수용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건에 대해 주목을 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공중의 에너지를 비난과 분노 등에 소진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언론학자 1 000).

학대행위내용을 부각시키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관행이 문제다(법학전문가 000).

2)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 인권 침해

언론이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피해자나 가족의 신원노출이나 사생활 침해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아동이나 가족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도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주변 인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

작년 발생한 인천 11세 여아 감금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피해아동의 체형, 얼굴, 옷차림, 걸음걸이 등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CCTV영상을 형식적인 모자이크 처리만 한 채 그대로 거듭 재생하거나 이를 캡처한 화면을 배경으로 사용한 보도를 반복하였다. 피해아동이 타고 내려왔다는 가스관, 세탁실의 외부창문, 다세대주택의 외관을 촬영하여 보도에 사용하여 피해아동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가명을 붙여 자극적인 기사들을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등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아동보호기관종사자 1 000).

2014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언론은 피해 아동의 친구, 학교, 이웃 등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 노출의 위험을 높였다. 칠곡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무차별적 인터뷰 등 언론들의 과잉취재의 문제점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2년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경로를 시간대별로 보도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사는 집의 위치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집과 일기장이 공개된 바 있다(아동복지전문가 000).

(부천여중생사건의 경우) 사망한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이미 졸업한 초등학교와 입학해 며칠 다니지 않았던 중학교는 취재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의 줄지은 방문에 학업방해 및 학생 불안 등 피해를 호소했지만 취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또한 사안을 접한 뒤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의 상황이었고, 조퇴를 했지만 기자들의 취재공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기자 000).

원영근 사건의 예만 보아도 이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상태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한동안

방송에도 인터넷 방송에서도 그대로 등장했다. 죽은 아이에게 초상권이 없다고 해석했을지라도, 친누나와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주의한 보도였다(언론학자 2 000).

인천송도어린이집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확대장면 CCTV가 보도돼 피해아동 및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해당 CCTV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서 거듭하여 인용보도 하여 이에 노출되는 피해아동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조작한 모자이크 등의 처리만 하여 피해아동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바, 개인정보보호의 부주의가 드러났다. 보도 이후, 위 영상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어 피해아동 가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변호사 000).

3) 아동학대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보도의 부족

앞서 논의했듯이, 언론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 보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언론이 사건이 일어난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건발생과정이나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000 기자는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동학대 사안의 보도 목적은 사건 발생에 대한 전달보다 발생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화, 즉 아동 학대가 줄고 나아가 근절되도록 함입니다. 그러나 신원영군 사건, 부천여중생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도를 지켜보면 사건의 본질 보다는 작은 팩트 하나라도 찾아서 ‘단독’ 을 난발하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폭증한 매체 수 탓으로 사안에 대한 분석보다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확대 재생산이 반복됐습니다(기자 000).

‘또 발생했다’ 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최근 들어 아동학대범죄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보이는가 등의 원인분석, 방지책 모색, 현 상태 개선방안 등 구조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언론학자 1 000).

해당사건이 왜 일어났고, 예방은 불가능했는지,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다(아동기관종사자 2 000).

4) 계모에 대한 편견 강화

앞서 논의했듯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계부나 계모가 아동학대에 연루된 경우 언론보도로 인해 계모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경우가 있다.

부천여중생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가 계모와 친부로 드러나면서 계모, 계부에 의한 학대가 이슈가 됐습니다. 실태보고서 등 통계에 의하면 계부모에 의한 학대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모에 대한 학대가 부각되면서 제대로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기 힘들었고 계부모에 의한 학대만이 문제라는 식의 보도가 양산됐습니다(기자 000).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굳이 혈연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정상적인 모성과 부성을 발휘하여 양육하는 양부모, 또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언론학자 1 000).

이 같은 문제점 외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신고자가 근무하는 장소나 신고경위를 특정할 수 있는 보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아동보호기관종사자 1 000).

2.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보도방향에 대해 인터뷰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피해아동의 인권 존중

앞서 살폈듯이, 취재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보도는 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이와 관련, 인터뷰참가자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심한 익명보도’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시민들의 공분과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사건을 부풀리고, 가해자의 신원은 물론, 피해자의 신분도 가급적 드러내보려는 언론의 취재보도 방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노출은 곧, 피해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의미한다는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에 대한 철저한 익명 편집과 보도방식이 요구됩니다(언론학자 3 000).

학대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 언론의 아동학대 사건보도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들의 과도한 보도행위로 인한 CCTV영상,

사진 등의 정보는 피해아동의 신상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아동복지전문가 000).

모든 보도에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아동보호기관종사자 1 000).

인천초등생감금탈출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체중, 심리치료의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보도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보도는 추후 피해아동이 성장한 이후 자신의 과거 학대피해사실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변호사 000).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가해자 정보공개로 인해 피해자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법학전문가 000).

2)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

아동학대사건은 사건의 전개과정이나 양상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 관련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제작이 아닌 이상 현재 국내 언론의 여건상 쉽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1~2년 단위로 출입처가 바뀌고 사건 담당은 초년 기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가 돼있는 기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의 의미, 복지제도 등 용어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맞닥뜨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분야별로 전문기자까지는 아니어도 복지정책이나 범죄, 학대 이슈 등 사안별로 기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기자 000).

기획보도가 선정적이고 단발적인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 양은냄비식 보도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이 연대하여 아동, 어린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형태를 유형화하고 각 성장단계별, 지역별, 유형별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취재하고, 연구하고, 보도하여 시민과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획보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언론학자 3 000).

통계치 등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아동학대 현황이 종단적으로 또 횡단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큰 그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언론학자 1 000).

3) 전문적인 취재영역으로의 접근

언론학자 3 000은 아동학대사건을 일반 범죄사건처럼 다루지 않고 전문적인 취재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들의 심리적 피해까지 고려하고 줄일 수 있는 취재접근과 이들의 2차적 피해를 예방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아동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이니셜을 쓰는 언론인들도 있지만, 곧바로 가해자 부모와 가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 피해자들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 잘못을 언론은 버전이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신입 언론인 교육과 중견 언론인의 재교육, 편집자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편집이나 데스크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 언론이나 소규모 언론의 경우, 자율언론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한 교육, 재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 언론문화적 속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언론의 전문성 구축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후속보도의 중요성

아동학대를 비롯한 많은 사건들의 경우 장기적인 후속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속성상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순간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이후에는 관련 보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가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걸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별떼처럼 몰려들었다가 무관심해지는 것은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원영군 사건의 경우 원영군의 누나에 대한 친권을 놓고 가족 간에 분쟁 소지가 있었지만 이후 관련 보도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다 맨발로 탈출해 이슈가 됐던 인천 연수구의 학대 사건은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재판 관련 보도만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인원의 여유가 많지 않은 등 현실적인 문제만을 따지기에는 소외되는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기자 000).

5) 취재원의 다양화

취재원이 지나치게 경찰위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취재원이 대부분인데 사건 해석을 함에 있어 복지나 심리, 교육 등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대예방활동 등도 경찰활동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경찰이 이 문제의 핵심 해결자라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언론학자 1 000).

6) 단일사건인 경우 일회성 결과 중심 보도

변호사 000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회성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처리하되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기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급적 보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

인터뷰참가자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표 V-1> 참조).

표 V-1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 피해자 신원공개 금지
 - 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제한
 -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 개별적인 인터뷰로 인한 사실왜곡의 방지
- 아동의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집중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영상이나 재연의 금지
-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 가령, 아동 생전의 사진, 편지, 소지품 등
- 피해자의 가족 및 관계 기관 등이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가 경찰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기자와 접촉할수 있도록 할 것
 - 담당 실무자가 사태수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동안이라도 취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사건보도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예: 계모의 아동학대살인 등 ‘계모’ 부각)
-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주변의 또래, 형제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학대피해아동과 인터뷰를 한다고 씬터나 학교를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 시설에서 벌어진 성학대 피해사건 취재한다고 시설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너 00아니? 00의 사건 아니?”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취재하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하지 말 것 (예: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 시도)

- 가해자 신원공개 금지
- 아동학대보호영역은 의료, 환경보호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취재영역임.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식,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 철저한 인권의식, 윤리의식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전문영역임
- 학대방법 및 수단에 대한 자세한 서술 제한
- 가족유형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용어나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
- 아동학대 신고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노출 금지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취재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측에서 해당보호도 삭제를 요청할 시 신속하게 삭제해줄 의무를 규정
- 단일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완료 후 일회적 보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의 책임, 혹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방식의 기술 금지

흥미롭게도 한 인터뷰 참가자(언론학자 3 000)는 아동학대보호 영역이 의료나 환경보호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취재영역임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들을 요약하면 피해아동 및 주변 인물들의 신상정보공개 금지, 아동학대방법 및 수단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제한, 자극적인 영상이나 재연 금지 등이 아동학대사건보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들이다.

제 VI 장

아동학대언론보도 가이드라인

1. 기존의 보도준칙 분석
2.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제 VI 장 아동학대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1. 기존의 보도준칙 분석

아동학대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지만 관련법이나 언론사의 보도준칙 등에서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언론은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아래 박스 참조).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EF1AA6565084E19B037331E780614DF0에서
2016년 6월 3일 인출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2016. 5. 2)도 아동의 권리를 제시하면서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아동학대 보도와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아동 권리 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6. 5. 2). 아동권리헌장 리플렛.

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이 제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제13조 어린이보호(아래 박스 참조)를 통해 언론이 아동문제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이 요강에 따르면,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고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지침은 이 윤리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 ③ (유괴 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에서 2016년 6월 3일 인출

반면, 자살보도에 대한 내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즉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에서 2016년 6월 3일 인출

방송심의규정 제6절 어린이·청소년보호에는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수용 수준)

-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출연)

-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4),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Law_List.php?ko_board=info_Law&str1=&search_stx=&page=2 에서 2016년 6월 2일 인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협력하여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나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부분에는 언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여 보도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준칙에도 아동학대보도와 관련된 보도준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에서 2016년 5월 31일 인출

아동학대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그나마 참조할 수 있는 것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2014년 펴낸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언론사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이 아래 <표 VI-1>과 같이 제시돼 있다. 즉 취재활동 등 미디어활동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촬영 전에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VI-1 아동권리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내용
①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존중 -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모든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미디어 활동이 아동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까지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③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 촬영 전에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는 아동 및 보호자가 촬영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이나 유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촬영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 및 촬영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④ 아동의 사생활 보호 - 아동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촬영 과정과 보도 이후까지 아동의 신변 보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촬영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촬영 관계자와 촬영의 대상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 보도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파급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 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⑦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당면한 상황과 아동의 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보와 촬영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
⑧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보호자를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주체로 묘사해야 합니다.
⑨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속한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⑩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 한국의 협력 기관과 촬영 국가 내 동행하는 현지 기관 직원 등 미디어 활동의 협력 파트너를 존중해야 합니다.

출처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4-5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홈페이지(www.ngokcoc.or.kr/)에서 2016년 5월 30일 인출

언론보도 및 홍보물 제작시 준수사항에는 아동의 이름은 가명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아동을 동정 및 시혜의 대상이나 약자,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이처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은 빈곤, 질병, 학대, 착취에 놓인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하면서 9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표 VI-2> 참조). 즉 자살보도를 최소화하고 자살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자살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VI-2 ‘자살보도 권고기준2.0’ 9가지원칙

내용
①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③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④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내용
⑥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⑧ 자살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⑨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201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도 참고할만하다(<표 VI-3> 참조).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피해자 보호 우선, 선정적, 자극적 보도 지양, 신중한 보도, 성폭력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표 VI-3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내용
①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낯선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내용
③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중하게 보도하기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가지기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에서 2016년 6월 29일 인출

구체적인 실천요강에서는 취재시 주의사항, 피해자의 자세한 피해상황 보도 자제, 범행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 지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표 VI-4> 참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아동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뷰를 할 경우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VI-4 성폭력사건 보도 실천요강

1. 취재 시 주의사항
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 외부를 촬영하

1. 취재 시 주의사항

- 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피해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자신의 소속과 기자임을 먼저 밝히고, 인터뷰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하여야 한다.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 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거주지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 신원 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란 없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아래 정보들이 많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범주가 좁을수록 노출될 위험이 높다.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신분 피해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등 소속 집단이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 피해자의 거주지 : 거주지 사진 내지 영상이 함께 실릴수록, 마을이 특정될수록,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 범죄 발생 장소 : 범죄 발생 장소는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긴 하나, 피해자와 연관된 공간이므로 정보가 주어질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지 주의하여야 한다(예 : 학교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등).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예 : 친구, 직장 동료, 제자, 신도, 친족 등)도 보도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높은 정보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인적 정보와 그 관계성에 의해 피해자도 덩달아 특정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종합하여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주변인 인터뷰 :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히 아동)**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뷰를 하거나 좁은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 주민, 관계자가 인터뷰를 할 경우 이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 간접정보들의 조합 :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관련 속보 경쟁 상황에서는, 여러 언론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들의 조합으로 피해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피해자의 관련 정보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1. 취재 시 주의사항

- ③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 평소 습관, 기호, 질병, 장래 희망,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
- ④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 개인, 가정환경
 -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음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의 접근 가능성 등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피해자 또는 가족이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보안이 허술했다는 사실 등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의 일부로서 보도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이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 ⑤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 ⑥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유린하는 내용이나, 가해자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수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즉 저 정도의 잔인성, 무자비함을 보아야 성폭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잔인성을 부각할 경우 일종의 ‘괴담’처럼 비화되어, 대중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 가해자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사이코패스이거나 변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도식화로 연결되기도 하여,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겉보기에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외면하게 만든다.
- ⑦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에서 2016년 6월 29일 인출

이처럼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언론윤리규정을 두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배상률, 2014).

그나마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가 제시한 아동취재 가이드라인은 참고할만하다(UNICEF, 2016).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원칙, 인터뷰가이드라인, 취재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VI-5>와 같다.

표 VI-5 UNICEF 아동취재가이드라인

내용
① 원칙 - 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 아동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그들의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토리나 이미지를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인터뷰 가이드라인 -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아동의 아픔이나 슬픔이 재발하도록 하는 어떠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 - 방송인터뷰시 아동의 집이나 커뮤니티, 일반적 거처 등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아동보도 가이드라인 - 아동이 성적 폭력 피해자, 물리적, 성적 학대 가해자, 범죄혐의자 HIV 양성자인 경우 항상 아동의 신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아동의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아동은 어떤 위해(harm)나 낙인(stigmatization), 보복(reprisals)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출처: UNICEF(2016). Reporting guidelines. http://www.unicef.org/media/media_tools_guidelines.html 에서 2016년 8월 3일 인출.

이처럼 UNICEF의 가이드라인도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시 아동을 잠재적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제시돼 있지 않다.

외국의 사례 중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다.³⁾ 방송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시청자의

3) 일본사례의 경우 일본에서 언론학박사학위를 받은 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구성하였음.

기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방송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BPO(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 Broadcasting Ethics & Program Improvement)는 ‘아동살상 사건등의 보도’에 대한 준칙을 2005년 12월 19일 제시한 바 있다(<표 VI-6> 참조). 이 안에 따르면, 아동을 어떻게 죽이고 상처를 입혔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모방의 우려가 있고 어린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 VI-6 BPO의 아동살상사건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

내용
① 「살상 방법 등의 상세한 보도」에 관해 흥기·살상방법·시신의 손상 상황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을 유발하거나, 어린이 시청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위험이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피해아동의 가족, 친구에 대한 취재」에 관해 가족이나 친구 등에 대한 집요한 취재, 특히 아동에 대한 인터뷰는 비참한 사건에 의해 충격 받은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린이의 심적 영역을 짓밟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취재는 한 층 더 배려해야 한다.
③ 「피해아동 및 미성년 용의자의 문장 등 방송」에 관해 프라이버시 및 가족의 심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방송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출처: <http://www.bpo.gr.jp/?p=5127> (2016년 8월 28일 인출)

2.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기존의 보도준칙과 앞서 나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아동학대사건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음 <표 VI-7>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초안을 만들고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초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자문회의 때는 언론학자 3명의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 회의 때는 3명의 현직 기자와 2명의 교수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춰 가해자의 신원공개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표 VI-7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보도가 아동 및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① 피해아동 및 가족의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제한
 -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예: 아동 생전의 사진, 편지, 상담내용, 소지품, 학교생활기록부 등).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가해자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가급적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취재과정

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생존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주거지 등에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피해상황을 알고 싶으면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취재를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 및 관계기관 등이 취재를 거부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및 보도 자제

- 언론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예: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③ 신고자의 신분 보호

- 언론은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인터뷰를 시도)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도내용

①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제한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가급적 학대방법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학대방법에 대해 전달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언론은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집중적으로 노출하거나 학대장면의 재연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 관련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②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 금지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계모의 아동학대살인 등 ‘계모’ 부각).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44.5%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재혼가정 7.5% 순이었다.

③ 피해자나 가해자위주의 아동학대사건 지칭 금지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지칭할 때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신원영군 학대살인사건, 원영이사건, 나주 고종석사건 등).
- 가급적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예: 인천아동학대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등)

본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과 관련해 언론이 지켜야 할 내용이고 둘째는 피해아동 및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준수해야 할 윤리이며 셋째는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이다.

1)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앞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사건보도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원은 당연히 공개돼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상담내용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공중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앞서 살핀 대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비롯되므로 가해자의 신원도 공개돼서는 안 된다. 만약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도 생전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주변가족들에게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취재과정

본 가이드라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를 강조하였다. 앞서 일본의 BPO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언론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 인터뷰를 할 경우 인터뷰당사자는 피해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아동에게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보다는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취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신원뿐 아니라 피해상황이 순식간에 학교에 퍼질 수 있고 이는 피해아동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3) 보도내용

학대방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거나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방송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시청자들을 지나치게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영상자료를 내보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하더라도 철저히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한다(표창원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소통학회, 2016). 따라서 언론은 가급적 학대방법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통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재혼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가 않다. 계모에 의해 아동학대사건이 이뤄졌다고 강조할 경우 아동학대사건이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편견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계모에 의한 행위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을 지칭할 때도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로 사건을 지칭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4) 소결

위에서 언급된 가이드라인은 언론사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본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PD 저널에서 지적됐듯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 스스로 기자윤리강령이나 인권보도준칙 등을 마련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최영주, 2014). 따라서 기자들의 재교육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 기자가 말한 대로 기자들은 수많은 언론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준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클릭수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김희영, 2016). 즉 보다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서 기자들이 보도윤리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자교육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취재하거나 아동관련 문제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저널리즘 윤리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의 한 교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거치고 아동과의 인터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는 숙련된 저널리스트들이 아동취재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Fullerton, 2004). 또한 그는 언론사들이 아동을 적절하게 취재하기 위한 타당하고 책임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언론사에서 데스크를 맡고 있는 부장급 이상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표창원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소통학회, 2016).

이 같은 주장들을 요약하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를 위해서는 기자들이 기존에 제시된 아동관련 보도윤리를 충실히 따라야 하고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의 특성에 주목해 아동관련 보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협의를 거친다면 보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마련된 아동학대사건보도가이드라인의 확산과 홍보를 위해서는 먼저 기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재교육프로그램에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예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기자조직의 구조적 특성상 신문사의 편집국장이나 방송사의 보도국장이 뉴스의 논조나 내용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2013).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인숙, 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85-118.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홈페이지(www.ngokcoc.or.kr/)에서 2016년 5월 31일 인출.
- 김경호 (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2), 88-120.
- 김은정 (2016. 3). 아동학대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제233호, 31-43.
- 김희승 (2016. 3).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훈저널**, 138, 63-69.
- 김희영 (2016. 04. 15). 언론, 피해자 가족 두 번 올린다: '칠곡사건' 과잉취재로 피해아동 언니 거처 옮겨 다녀.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3321> 에서 2016년 8월 2일 인출.
- 노성호, 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7-191.
- 동리민, 윤영도 (2013). 들여다보기 · 보지 않기 - 변화하는 중국 미디어의 수사정치학—중국 CCTV <들여다보기(看見)>의 “원저우 아동 학대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5), 133-162.
- 박용규(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2), 156-185.
- 배상률(2014).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R25.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6. 5. 2). **아동권리헌장 리플렛**.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201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 심영희 (1995). 범죄와 언론보도. **한국방송학보**, (6), 79-114.
- 양정혜 (2010). 뉴스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래밍. **언론과학연구**, 10(2), 343-379.
-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2014. 04. 10).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백서**.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유우현, 정용국, 정지희 (2016). 폭력 범죄 보도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및 인지적 영향 : 두려움 반응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1), 42-67.

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가을호, 65-94.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전영실 (2002).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와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2), 53-77.

크는나무아동상담소 (2010). **아동학대의 이해**. 파주: 양서원.

최숙 (2016). 아동인권특수성이해 필수 실천은 더 중요-국내외 미성년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신문과 방송**, 4월호, 37-40.

최영주 (2014. 04. 16). 언론은 또 다른 아동범죄 가해자: 인권보도준칙 무용지물·자극적 소재로 전락 ... 제도개선으로 눈 돌려야. PD 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1678>에서 2016년 8월 3일 인출.

표창원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소통학회 (2016. 08. 23).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자료집**.

하은경, 박천만 (2002). 아동학대실태 및 관련 요인: 대구광역시 일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51-36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인영, 유서구, 박명숙, 박형원, 이용우, 김진숙 (2007).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 **아동권리연구**, 11(1), 77-100.

홍숙영 (2011). TV다큐멘터리의 아동성폭력 재현 방식 - 'KBS시사기획 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 101-112.

[언론보도]

미디어스(2016.3.17). '분노'만 부추긴 평택 아동사건보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34>에서 2016년 5월 27일 인출.

Cheit, R. E., Shavit, Y., & Reiss-Davis, Z. (2010). Magazine Coverage of Child Sexual Abuse, 1992-2004.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9, 99-117.

Fullerton, R. S. (2004). Covering Kids: are journalists guilty of exploiting children? *Journalism Studies*, 5(4), 511-524.

Hove, T., Paek, H., Isaacson, T., & Cole, R. T. (2013). Newspaper portrayals of Child Abuse:

- Frequency of Coverage and Frames of the Issu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6, 89-108.
- Mejia, P., Cheyne, A., & Dorfman, L. (2012). News Coverage of Child Sexual Abuse and Prevention, 2007-2009.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1, 470-487.
- Niner, S., Ahmad, Y., & Cuthbert, D. (2013). The 'social tsunami': Media coverage of child abuse in Malaysia's English-language newspapers in 2010. *Media, Culture & Society*, 35(4), 435-453.
- Payne, B. K., Appel, J., & Kim-Appel, D. (2008). Elder Abuse Coverage in Newspapers: Regional Difference and its Comparison to Child-Abuse Coverag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3), 265-275.
- UNICEF(2016). Reporting guidelines. http://www.unicef.org/media/media_tools_guidelines.html 에서 2016년 8월 3일 인출.

부록 1.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전문가 질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6년 수시과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근 들어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부천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아들 학대 살해사건, 청주에서 일어난 4세 의붓딸 암매장사건, 평택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유롭게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2.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보도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3.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연구보고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 쇄 2016년 9월 26일

발 행 2016년 9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발행인 노 혁

인쇄처 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